

연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3월 15일

연 천 군 의 회 의 장 심 상 금

연천군의회 예규 제2호

연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임방법) ① 위원은 연천군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위촉기간)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,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대표위원)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

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의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,

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각 위원이 군의회 의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 선임 기간) ① 선임된 위원은 선임된 연도부터 3년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계속하여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3년간 위원으로 활동 후 계속하여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회계전문가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계속하여 선임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연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선임되었던 위원은 이 예규 발령 이전 선임된 기간을 포함한다.